

# 자체평가 규정

제정 2010. 3. 1.      전문개정 2013. 3. 1.  
개정 2013. 7. 1.      개정 2013. 11. 15.  
개정 2014. 3. 1.      개정 2015. 8. 31.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정 2016. 7. 28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평가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및 학칙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2조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3조(평가대상)**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하되, 학부(과), 행정부서 및 기타 별도조직으로 할 수 있다..

**제4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**제5조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시기)** 자체평가는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우리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15.>

## 제 2 장 평가기구

**제7조(전담부서)**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며, 전담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② 기획조정실장은 평가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③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단, 총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, 2015.8.31., 2016.7.28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방향 수립
2. 자체평가 지도 심의 및 조정
3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4.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, 공시 및 개선·환류 계획 수립 <개정 2013.7.1.>
5.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<개정 2013.7.1.>
6. 기타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총장은 필요할 경우 7명 이내의 내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록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10조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11조(실무위원회)**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등 지급)**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내·외부 위원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**제13조(평가계획 수립)** 기획조정실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학과)에 통지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14조(평가자료 제출)**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(학과)는 기획조정실에 평가자료를

제출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15조(평가실시)** ① 기획조정실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6조(실사)**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(학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7조(평가결과 보고)** 자체평가위원장은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(학과)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**제17조의2(평가결과 공시)** 자체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.

[본조신설 2013.11.15.]

**제17조의3(평가결과 활용)** ① 자체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반영, 학부(과) 및 부서의 구조조정,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11.15.]

② 자체평가 결과 우수 학부(과) 및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·재정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
**제18조(운영세칙)** 자체평가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7.1.]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7조(전담부서) ①항, ②항, 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②항, 제13조(평가계획 수립), 제14조(평가자료 제출), 제15조(평가실시) ①항의 기획처 명칭은 '기획홍보처' 로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홍보처장'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7조(전담부서) ①항, ②항, 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②항, 제13조(평가계획 수립), 제14조(평가자료 제출), 제15조(평가실시) ①항의 기획홍보처 명칭은 '기획처' 로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'기획처장'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7조(전담부서) ①항, ②항, 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②항, 제13조(평가계획 수립), 제14조(평가자료 제출), 제15조(평가실시) ①항의 기획처 명칭은 '기획조정실' 로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조정실장' 으로 개정한다.